혼잡통행료업무규정

제정 2006.11. 2 규정 제569호 개정 2014. 4. 1 규정 제745호 2016. 7.12 규정 제822호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이 위탁받은 남산1,3호 터널을 통행하는 차량 이용자에 대한 혼잡통행료(이하 "통행료"라 한다) 징수업무 및 이를 위한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) 혼잡통행료 징수업무는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(이하 "조례"라 한다)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.
- 제3조(업무범위) 공단의 남산1,3호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 - 1. 혼잡통행료 징수 및 수입금 관리
 - 2. 징수시스템 및 시설물 유지관리
 - 3. 요금관리소 운영
- 제4조(혼잡통행료 감면) 경형승용차등 시장이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.
- **제5조(근무제도)** 교통시설운영처장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무시간, 근무방법, 휴무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2장 수입금 관리

- 제6조(관리책임) 통행료 수입금(이하 "수입금"이라 한다)은 관리소장(이하 "소장"이라 한다)이 관리한다.
- **제7조(영수증 발행)** 남산1,3호터널 통과차량에 대하여 현금 또는 정액권, 교통카드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행(정액권 제외)하여야 한다.
- 제8조(수입금 정산) 소장은 혼잡통행료 징수원(이하 "징수원"이라 한다)이 근무시간 동안 징수한 수입금을 근무교대시 마다 차질없이 정산하여야 한다.
- **제9조(수입금 결산 및 납입)** ①소장은 요금소별로 일일 수입금을 결산하고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가 지정한 금고에 당일 납입하여야 한다.
- ②소장은 근무 종료후 정산서와 대조하여 수입금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**제10조(수입금 보고)** ①소장은 납입영수증을 첨부한 일일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하여 매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공단은 매월 수입금 및 차량 통행량을 익월 20일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.(개정 2014.4.1)

- 제11조(과오납금 등 정산 및 납입)<본조 개정 2014.4.1> ①소장은 일일 발생하는 과오납금(후납 포함)현황을 징수시스템에 입력하고 매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소장은 과오납금중 환불을 위하여 요금소별 3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.
 - ③공단은 과오납금 환불안내문을 차량소유주에게 월1회 우편으로 고지하고, 미환불 과오납금과 후납금액을 매월 정산하여 서울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(개정 2014.4.1)

제3장 과태료 부과·징수

- 제12조(과태료 부과·징수) ① 공단은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통행 한 차량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하고, 10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(개정 2014.4.1)
 - ②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공단은 100분의20을 감경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 (개정 2014.4.1)
 - ③ 공단은 제2항에 의한 납부 및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(개정 2014.4.1)
 - ④공단은 1차 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2차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장(이하 "독촉 장"이라 한다)을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여야 한다.(신설 2014.4.1)
 - ⑤공단은 1차 과태료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매 1 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수한다.(신설 2014.4.1)
 - ⑥공단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.), 전자메일, 문자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.(신설 2014.4.1)
- **제13조(과태료 부과취소 및 변경)** 공단은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부과취소 또는 변경고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**제14조(자동차 압류등록 촉탁)** 공단은 독촉장을 송달받고서도 기한 내에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자동차 압류등록 촉탁을 의뢰하여야 한다.
- **제15조(자동차 압류등록 해제)**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에 대하여 공단은 즉시 서울시에 압류등록 해제 를 의뢰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이의신청 결과통보) 공단은 과태료 부과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통보하고,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(개정 2014.4.1)

제4장 정액권 환불 및 폐기(개정 2014.4.1)

- 제17조(정액권환불)<본조개정 2014.4.1> 공단은 정액권 환불 신청시 신청서와 정액권을 제출받아 정액권 실물의 위조여부를 확인한 후 서울시에 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.(2014.4.1)
- 제18조(정액권 폐기) 공단은 회수한 정액권을 재사용 할 수 없도록 2곳을 천공하여 매분기 마다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칙

- **제19조(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중지)** 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혼잡통행료징수를 일시중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20조(혼잡통행료 후납징수) 소장은 남산1,3호터널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부득이 하게 현금을 갖고 있지 않거나 부족 등의 이유로 후납을 요청할 때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7.12.)
- **제21조(종사자의 의무)** 혼잡통행료 징수업무 종사자는 청렴하고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, 이용시민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시설관리) 소장은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관리실태를 점검(일일, 주, 월)하여야 한다.

부 칙(2006. 11. 2)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4. 4. 1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7. 12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